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1796호
2. 제 출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3. 제출일자 : 2024. 4. 3.
4. 회부일자 : 2024. 4. 8.

II. 제안이유

1. 국가정책사업*의 안정적 이행, 증가하는 행정서비스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

* 늘봄학교, 유보통합, 학교복합시설, 학생맞춤형통합지원 등

- 타 시·도교육청 직급별 정원책정기준과의 형평성 및 균형*을 고려하여 우리 교육청 6급 이하 정원책정기준 상향 조정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항 제1호

2. 국정과제 '유보통합'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과 단위 기구 설치에 따라 부서장 직급 배정을 위한 단위기관 내 직급 조정
3. 증가하는 행정 수요(산업안전·보건·환경·급식 등)에 효율적 부응

및 통솔범위 적정화를 위해 보건안전진흥원 (가칭)총무부를 신설함에 따라 단위 기관 내 직급 조정

III. 주요내용

1.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 조정 (안 제3조 관련 별표 2)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9급	전문경력관
비 율	2% 이내	8% 이내	30% 이내	36% 이내	23.5% 이상	0.2% 이내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9급	전문경력관
비 율	2% 이내	8% 이내	33% 이내	40% 이내	16.5% 이상	0.2% 이내

2.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 (안 제4조 관련 별표 3)

- 일반직 정원 조정: 총계 변동 없음
 - 4급 정원 증원: 증 2명 (42명 → 44명)
 - 본청(직속기관 포함) 4급 정원 증원: 증 2명 (31명 → 33명)
 - 5급 이하 정원 감원: 감 2명 (7,042명 → 7,040명)

IV. 참고사항

1. 관계법규: [별첨 5]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2. 예산조치: [별첨 1]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3. 협 의: 관련 부서와 협의하였음

4. 기 타

가.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붙임

나. 입법예고(2024. 3. 25. ~ 2024. 3. 27.) 결과: 의견 없음

다. 규제심사: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별첨 2]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별첨 3] 제외통보 확인서

바. 학생인권영향평가: [별첨 4] 학생인권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개정조례안은 2024년 4월 3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1796호로 제출되어 2024년 4월 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개정조례안은 과 단위 기구 설치 및 신설에 따라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 국가정책사업 등의 안정적 이행 등을 위해 6급 이하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에 관한 검토

- 동 일부개정조례안 [별표2]는 일반직공무원 직급별 정원 기준에서 8급·9급의 비율 기준을 23.5% 이상에서 16.5% 이상으로 감소시키고, 6급의 비율 기준을 30% 이내에서 33% 이내로, 7급의 비율 기준을 36% 이내에서 40% 이내로 증가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 교육행정기관 직급별 정원 관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¹⁾에 근거해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²⁾에 따라 교육감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공무원의 배치) ①제30조제5항의 보조기관과 제32조의 교육기관 및 제34조의 하급교육행정기관에는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해당 시·도의 교육비특별회계가 부담하는 경비로써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2)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정원의 관리) ① 교육감은 조직 간 균형 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있습니다.

○ 이와 같이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상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법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한편 현행 직급별 ‘정원 및 현원’을 살펴보면([표-1] 참조), 현재 서울시교육청의 직급별 ‘정원’은 6급 1,916명(26.9%), 7급 2,695명(37.8%), 8·9급 2,091명(29.3%)으로,

현재 6급 책정 기준(30% 이내, 2,138명 이내), 7급 책정 기준(36% 이내, 2,565명 이내), 8급·9급 책정 기준(23.5% 이상, 1,674명 이상)에 의하면, 7급 정원이 130명(1.8%) 초과되어 있습니다.

- 특히 현재 서울시교육청의 직급별 ‘현원’을 살펴보면, 6급 1,878명(27.8%), 7급 2,800명(41.4%), 8·9급 1,669명(24.7%)으로,

현재 7급 현원은 7급 책정 기준(36% 이내, 2,565명 이내)보다 235명(5.4%)이나 초과되어 있는바, 실제 7급 인원은 책정 기준을 상당히 충족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 또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제1항제1호3)에 따르면, 정원채정기준은 관할 지역의 행정수

② 교육감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 및 감축 현황을 조사·확인하여야 하고, 그 조사·확인 결과를 기관별·기구별·종류별·직렬별·직급별로 종합하여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새로운 증원 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시·도 교육청의 정원의 범위에서 정원을 자체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한 분야의 인력
2. 유사하거나 중복된 기구 또는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3. 업무의 성질상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3)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정원 책정의 일반기준) ① 정원은 정원관리의 단위기관(이하 “단위기관”이라 한다)별로 직급을 정하여 책정하

요 및 다른 시·도 교육청과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현재 타 시도 교육청의 정원채정기준 평균 비율을 살펴보면, 6급은 32.5% 이내, 7급은 39.1% 이내, 8·9급은 17.5% 이상으로, 금번 개정조례안에서 6급 33% 이내, 7급 40% 이내, 8·9급 16.5% 이상으로 변경할 경우 책정 기준이 타 시도교육청 평균 기준과 유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표-1] 타 시도교육청 정원채정기준 평균 비율 및 서울시교육청 정원채정 기준 개정(안) 비율 비교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9급	전문경력관
타 시도평균	2% 이내	8.4% 이내	32.5% 이내	39.1% 이내	17.5% 이상	0.5%
서울	2% 이내	8% 이내	33% 이내	40% 이내	16.5% 이상	0.2% 이내

-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을 조정하는 것은 현재 정원 기준에 따른 현원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고, 상위법령에 따라 타 시도교육청의 정원채정기준 평균 비율을 고려하기 위한 것인바, 개정에 별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원 기준과 현원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서울시교육청이 조례에 규정된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인사 관리를 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인바, 서울시교육청은 정원채정기준에 맞게 현원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관할지역의 교육행정수요 및 다른 시·도 교육청과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직급체계를 이루어야 한다.
2. ~ 5. 생략
- ② 생략.

[표-2]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직급별 정원채정기준 조정 방안

[현행]									
구분		4급이상	5급	6급	7급	8급·9급	전문 경력관	연구직	계
채정 기준	비율	2%이내	8%이내	30%이내	36%이내	23.5%이상	0.2%이내	0.3%이내	100%
	(인원)	(143)	(570)	(2,138)	(2,565)	(1,674)	(14)	(21)	(7,125)
정원	비율	0.9%	4.8%	26.9%	37.8%	29.3%	0.1%	0.2%	100.0%
	(인원)	(62)	(340)	(1,916)	(2,695)	(2,091)	(7)	(14)	(7,125)
현원	비율	0.9%	4.9%	27.8%	41.4%	24.7%	0.1%	0.2%	100.0%
	(인원)	(60)	(334)	(1,878)	(2,800)	(1,669)	(7)	(11)	(6,759)

[개정안]									
구분		4급이상	5급	6급	7급	8급·9급	전문 경력관	연구직	계
채정 기준	비율	2%이내	8%이내	33%이내	40%이내	16.5%이상	0.2%이내	0.3%이내	100%
	(인원)	(143)	(570)	(2,351)	(2,850)	(1,176)	(14)	(21)	(7,125)
증감인원		-	-	▲213	▲285	▽498	-	-	-

나.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에 관한 검토

- 동 개정조례안 ‘[별표3]’ 은 ‘정원의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 중 일반직 정원 총계의 변동 없이, 본청(직속기관 포함) 5급 이하 정원 2명을 감하고, 본청(직속기관 포함) 4급 정원 2명을 증원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3] 지방공무원 정원 조정 현황

구 분	현 재(명)			증감(명)			
	계	본청 (직속기관 포함)	교육지원청	계	본청 (직속기관 포함)	교육지원청	
일반직	4급	42	31	11	42	33	11
	5급 이하	7,042	-	-	7,040	-	-
	일반직 계	7,125			7,125		
지방공무원 전체		7,722			7,722		

○ 교육행정기관 정원 관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⁴⁾에 근거해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⁵⁾에 따라 교육감이 조례⁶⁾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와 같이 동 개정조례안은 일반직 정원의 총계 변동 없이⁷⁾ 본청(직속기관 포함)의 5급 이하 정원을 줄이고 4급 정원을 증가시키는

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공무원의 배치) ①제30조제5항의 보조기관과 제32조의 교육기관 및 제34조의 하급교육행정기관에는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해당 시·도의 교육비특별회계가 부담하는 경비로써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5)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정원 책정의 일반기준) ① 정원은 정원관리의 단위기관(이하 “단위기관”이라 한다)별로 직급을 정하여 책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관할지역의 교육행정수요 및 다른 시·도 교육청과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직급체계를 이루어야 한다.
2. 업무의 성질·난이도 및 책임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직급별 정원을 책정해야 한다.
3.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 직위에 2개 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4개의 직렬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복수직렬로 할 수 있다.
- 3의2. 1개의 직위에 대해서는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직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일반직공무원을 갈음하여 별정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한 직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4. 1개의 직위에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동안 그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을 결원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5. 공립의 각급 학교에는 4급 이상의 정원을 책정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6)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정원의 관리) ① 교육감은 조직 간 균형 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7)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의2(정원 책정의 승인) ① 교육감은 일반직 3급 이상의 정원을 책정하려는 경우(정원 증가가 없는 경우 및 직렬 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미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정원 책정의 적정성 및 해당 직위의 직무 분석에 관한 자료와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것이며, 이는 동 조례의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채정기준[별표1]8)’ 및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별표2]9)’ 와도 부합하고 있는바, 금번 정원 조정에 있어 법령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동 개정조례안에서 증원하고 있는 본청(직속기관 포함) 4급 정원 2명 중 1명은 보건안전진흥원에 (가칭)환경산업안전부를 신설하면서 4급 정원을 배치하는 것입니다.
-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2023년 7월 조직개편으로 인해 보건안전진흥원이 학교급식 환경 개선 지원, 학교 공기정화장치 렌탈 및 유지관리비 지원,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사업 등의 업무를 이관받았고, 이와 같은 업무는 보다 전문적인 총괄 관리 기능이 요구되는바, (가칭)환경산업안전부를 신설하고 4급 정원을 배치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¹⁰⁾.
- 그러나 보건안전진흥원은 이미 2023년 7월 조직개편 당시 대규모 업무 이관으로 인해 보건안전진흥원장의 직급을 4급에서 3급으로 조정하고 보건급식부를 신설하여 4급 부서장을 배치하였으며, 그 외 보건 및 시설 분야 인원(7명)을 증원한 바 있습니다.

8) 동 개정조례안은 일반직 내의 정원 조정이므로 [별표1] 지방공무원 종류별 비율은 동일함.

[별표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채정기준(제3조 관련)

구 분	일반직·특정직	별정직·정무직
비 율	99.8% 이상	0.2% 이내

9) 동 개정조례안에 따라 정원이 조정되어도 4급이상 일반직공무원 비율은 0.9%, 5급이하 일반직공무원비율은 99.9%로 [별표2]의 4급 이상 비율 기준(2% 이내) 및 5급 이하 비율 기준(98% 이내)을 충족함.

[별표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제3조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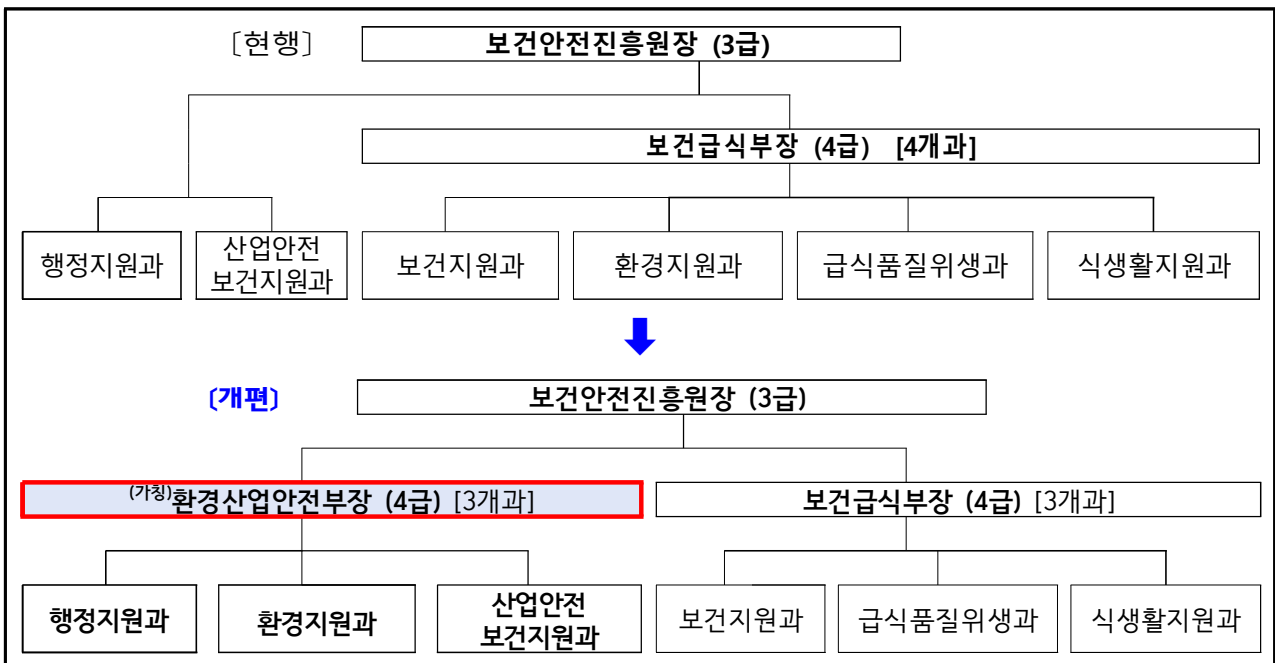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9급	전 문 경력관	연구직	
							연구관	연구사
비 율	2% 이내	8% 이내	30% 이내	36% 이내	23.5% 이상	0.2% 이내	0.03% 이내	0.27% 이상

10) 서울시교육청(2024.4.). 「서울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 관련 의회 보고 자료.

- 동 개정조례안은 이와 같은 대규모 조직개편이 이루어진지 1년도 되지 않아 ‘부 단위’의 조직을 신설하는 것으로, 이는 서울시교육청이 2023년 7월 조직개편 당시 이관되는 사업에 대한 업무 및 필요 인력에 대한 충분한 분석 및 검토를 하지 않은 결과라 사료됩니다.

[표-4] [가칭]환경사업안전부 신설



-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은 (가칭)환경산업안전부 신설의 또 다른 이유로 2023년 조직개편 이후에도 신설되는 사업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조직개편 이후 증가된 업무를 살펴보면([표-4] 참조), 검진비 및 시설비 지원 등의 ‘예산 지원’ 과 관련된 업무이거나, 학교 안전보건 순회 점검 등 보건안전진흥원 인력이 직접 필요한 업무라기보다 학교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 등이 다수인바,

2023년 조직개편 이후 보건안전진흥원의 예산 및 관련 사업이 증가하였다고 하여 보건안전진흥원의 업무가 이에 비례하여 과도하게 증가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표-5] 2023년 조직개편 이후 증가된 업무 현황

부서명	조직개편 이전(2023년)	조직개편 이후(2024년)	변동내역	
산업 안전 보건 지원과	-	급식종사자 폐암 검진비 지원 (850명, 150,000천원)	이관 (신설)	신규 채용 급식종사자 1차 검진비 및 2차 검진대상자 추적관찰을 위한 추가 검진비 지원
	-	학교(기관) 안전보건 순회 점검 실시 (250교, 자체 전문인력 활용)	이관 (신설)	안전·보건관리자를 활용한 안전보건 순회점검 실시 및 유해·위험 요인 개선 지원
	-	산업보건의 운영 및 근로자건강센터 협력사업 (100교, 11,400천원)	이관 (신설)	산업보건의 활용하여 근로자 건강상담 지원 및 근로자건강센터 협력사업을 통한 작업환경·건강관리 사업 추진
환경 지원과	학교 석면 안전관리 교육 및 컨설팅 (특별교부금 219,712천원)	(추가)석면 위해성평가 결과 관리 (추가)석면안전관리인 지정 및 교육 관리 (석면건축물학교 약 700교, 비예산)	강화 (기존)	일반지원사업에서 석면건축물학교 (위해성 평가, 안전관리인 지정·법정 교육) 관리 업무 추가
	-	어린이활동공간 검사 용역비 (557교, 940,700천원) 환경안전관리기준 초과 학교 시설 개선비 (3,060,000천원)	이관 (신설)	어린이활동공간 검사 용역비 및 환경안전관리기준 초과학교 시설 개선비 지원
	-	학교 공기정화장치 관리 (렌탈비 1,815교, 유지관리비, 351교, 20,855,474천원)	이관 (신설)	학교에 설치된 공기청정기의 렌탈비 및 유지관리비 지원
급식품질 위생과	-	학교급식환경개선(조리기구) 지원 사업 (618교, 26,228,511천원)	이관 (신설)	- 학교 급식실 조리기구 신규구입 및 노후조리기구 교체 예산 편성 - 조리기구 긴급 예산 지원 - 학교급식 조리기계·기구 관리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조례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칠 예정입니다.

의안심사지원팀장	정진국(2180-8263)	입법조사관	이가영(2180-8270)
----------	----------------	-------	----------------